

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19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0. 16

(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김 재 월

나. 폐지사유

-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,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고 중복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전면 폐지
- ※ 오수,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중복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폐지 조례안은 오수,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,
-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“규제법정주의” 정신을 볼때 마땅히 폐지해야할 조례라 생각되며,
- 동 조례의 폐지를 위한 절차나 상위관련 법규의 지속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